

제12절 안면의 장애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4배 이상 변형이 있거나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2배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자
3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2배 이상 변형이 있거나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자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변형이 있거나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1/2 이상이 없어진 자

2. 인정요령

가.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나. 안면장애에서 변형은 면상반흔,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을 의미한다.

(1) ‘면상반흔’이라 함은 치유 후 영구적으로 그 자리의 피부에 눈에 뚜렷하게 띄는 정도의 길이와 폭이 각각 1cm 이상의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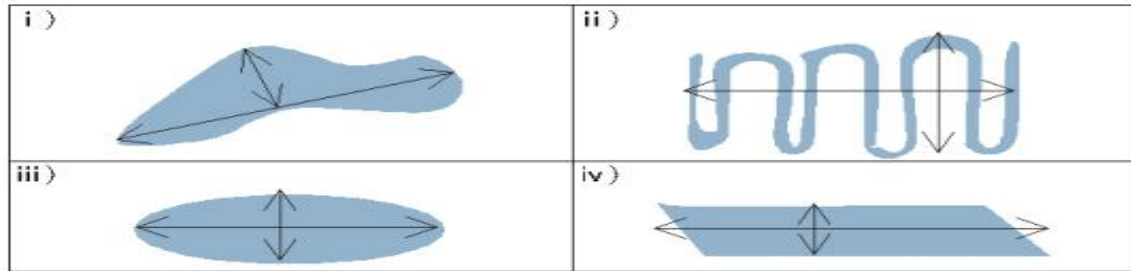
(2)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하며, ‘함몰’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 부위가 0.5cm 이상 패인 상태를 말한다.

(3) ‘손바닥 크기’라 함은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8×10cm로 면적 기준 80cm²를 의미하므로 폭이나 길이가 3cm 이상인 경우 총면적이 기준 면적에 해당하면 해당되는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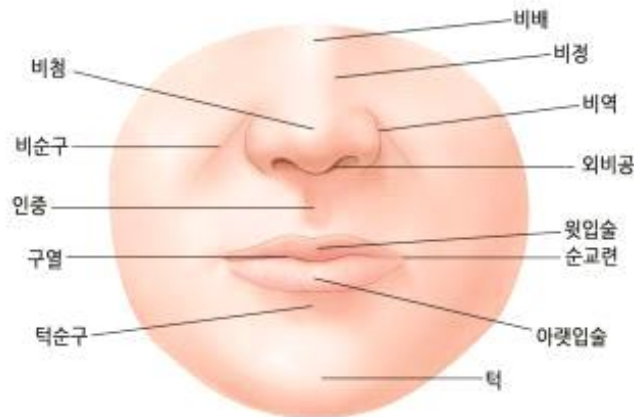
다. 변형부위의 측정방법은 면상반흔의 전체적인 반흔형태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장 긴 길이와 이에 수직이 되는 폭(세로)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변형의 모양에 따른 크기 산정례>



라. ‘입주위’는 위, 아래 입술을 포함하여 인중의 윗부분에서 턱순구까지와 양쪽 순교련을 지나도록 이은 선의 안쪽 부분을 의미한다.



<입과 코 주위의 형태>

- 마. 안면장애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병원에서 노출된 안면부를 전면·양쪽 측면·양쪽 3/4 측면을 촬영한 사진, 단순 X선 촬영, CT, MRI 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정하되, 이러한 자료에 의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자문의사가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바.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 사.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을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 아. 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될 수 있는 경우는 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의 수술적 처치 등으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